

건신상담심리센터 운영규정

제정 2017년 8월 24일
개정 2022년 3월 1일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건신대학원대학교(이하 “본교” 라 한다) 학칙 제94조의 ⑦에 규정된 건신상담심리센터(이하 “센터” 라 한다)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직무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- ① 상담·치료·교육 프로그램 사업
- ② 심리평가 프로그램 사업
- ③ 연구개발 프로그램 사업
- ④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사업
- ⑤ 지역 내 위치하고 있는 상담치료 센터와 연계 프로그램 사업
- ⑥ 학교교사 연수지원 프로그램 사업
- ⑦ 부모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사업
- ⑧ 센터 운영에 대한 종합계획 및 수립
- ⑨ 기타 센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업

제3조(조직)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본 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 다만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졌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전임교원을 임명할 수 있다.

-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, 업무를 총괄한다
- ③ 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부센터장, 간사 등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22.03.01.>
- ④ 센터에는 전문상담사를 둔다. 전문상담사는 본교 졸업생과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.

제4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신상담심리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.)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은 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외에 부센터장, 간사, 전문상담사 중에서 센터장이 선임하되 위원 수는 5인 이내로 둔다.<개정 2022.03.01.>

③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- 1.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
- 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3.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재정) 센터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재원은 자체조달(학술연구비 수입금, 상담 및 심리치료비, 교육비, 교내외의 기부금, 외부사업 공모 수수료 및 기타 수입금)을 원칙으로 한다. 단 센터의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본교 교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
제6조(회계연도) 센터의 회계 연도는 본 대학의 회계 연도를 따른다.

제7조(센터장, 부센터장, 간사, 전문상담사의 수당) <개정 2022.03.01.>

- ① 센터장 및 부센터장, 간사, 전문상담사의 수당은 본 센터의 수입금 중에서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22.03.01.>
- ② 수당 지급 기준은 본교 강사비 및 산학협력단 인건비 기준 등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
제8조(각종 장부의 기입비치) 간사는 센터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장부 또는 문서에 기입하고 비치하여야 한다.

- ① 회계에 관한 사항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
- ② 비품, 소모품의 보관 및 수급에 관한 사항
- ③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
- ④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제9조(보칙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문기관 및 대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이 규정 제정 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